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3

발의연월일: 2024. 5. 30.

발 의 자:윤상현・안철수・김성원

김석기 • 이헌승 • 박덕흠

엄태영 · 김승수 · 조경태

백종헌 • 이인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, 중앙당과 시·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.

그러나 당원협의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 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. 또한 예상하였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,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 으로 변경하여,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지역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생생 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정당은 중앙당과 시·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나.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, 지역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(안 제6조 및 제9조).
- 다.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고,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·도에 분산되도록 하며, 1개의 시·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8조의2 신설).
- 라.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(안 제18조의3 신설).
- 마.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·도당,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(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같은 조 제5항 신설).
- 바.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30조 제1항).
- 사. 지역당은 시·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

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 35조제1항).

아. 지역당 신설에 따라 기존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,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·시·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37조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특별시·광역시·도"를 "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"로, "시·도당(이하 "시·도당"이라 한다)"를 "시·도당(이하 "시·도당"이라 한다) 및 국회의원지역선거 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(이하 "지역당"이라 한다)"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"를 "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,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, 제18조의2(법정지역당수) 및 제18조의3(지역당의 법정당원수)"으로 한다. 제6조 중 "100명 이상의"를 "100명 이상의, 지역당의 경우에는 30명이상의"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"(시·도당의 창당승인)"을 "(시·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)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9. 지역당의 소재지와 명칭
- 10. 지역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

제13조의 제목 "(시·도당의 등록신청사항)"을 "(시·도당 및 지역당

의 등록신청사항)"으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3조(시·도당의 등록신청사항)"를 "제 13조(시·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)"로 한다.

제2장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법정지역당수) ①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한다.

- ②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·도에 분산되어야 한다.
- ③ 1개의 시·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18조의3(지역당의 법정당원수) ①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해당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.

제19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, 지역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, 지역당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당, 지역당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·도당,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

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당원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·도당 또는 지역당에도 각각 소속된 것으로 본다.

제24조제1항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 또는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 또는 지역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, 지역당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또는 지역당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또는 지역당"으로 한다.

이 경우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 시·도당 또는 지역당은 해당 탈당원이 속하였던 지역당 또는 시·도당에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26조 전단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27조의2제1항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"중앙당이 정한다"를 "중앙당이 정하며, 지역당에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"로 한다.

제35조제1항 전단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중앙당과 시·도당은 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건"을 "중앙당과 시·도당 및

지역당은 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,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, 제18조의2(법정지역당수) 및 제18조의3(지역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건"으로 한다.

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 ·시·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다. 다만, 누구든지 시·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다.

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"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건"을 "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,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, 제18조의2(법정지역당수) 및 제18조의3(지역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건"으로 한다.

제46조의 제목 "(시·도당 창당승인의 취소)"를 "(시·도당 및 지역당 창당승인의 취소)"로 하고, 같은 조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47조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또는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59조제1항제1호 중 "제13조(시·도당의 등록신청사항)"를 "제13조(시·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)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"를 "사무소를 둔 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당의 등록 및 성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정당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 및 성립된 정당으로 본다. 다만, 각 정당은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당의 등록 및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제3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청 체	ᆀ 과 야
현 행 	개 정 안
제3조(구성) 정당은 수도에 소재	제3조(구성)
하는 중앙당과 <u>특별시·광역시</u>	<u>특별시·광</u>
<u>·도</u> 에 각각 소재하는 <u>시·도</u>	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
<u>당(이하 "시·도당"이라 한다)</u>	<u>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</u>
으로 구성한다.	<u>시·도당(이</u>
	<u>하 "시·도당"이라 한다) 및 국</u>
	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
	는 지역당(이하 "지역당"이라
	한다)
제4조(성립) ① (생 략)	 제4조(성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등록에는 <u>제17조</u>	②제17조
(법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(시	(법정시·도당수), 제18조(시·
•도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건	도당의 법정당원수), 제18조의2
을 구비하여야 한다.	(법정지역당수) 및 제18조의3
	<u>(지역당의 법정당원수)</u>
제6조(발기인) 창당준비위원회는	제6조(발기인)
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	
의, 시·도당의 경우에는 <u>100명</u>	
<u>이상의</u> 발기인으로 구성한다.	<u>100명 이상의, 지역당의 경</u>
	<u> 우에는 30명 이상의</u>
제9조 <u>(시·도당의 창당승인)</u> <u>시·</u>	제9조 <u>(시·도당 및 지역당의 창</u>

<u>도당</u>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.

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

② · ③ (생 략)
제13조(시·도당의 등록신청사항)
① ~ ③ (생 략)

제14조(변경등록) 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 및 제13조(시 ·도당의 등록신청사항)의 등록신청사항)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.

1. ~ 5. (생 략) <신 설>

<u>당승인)</u> 시·도당 및 지역당
· 레10구(조이디지 드리지키기퀴)
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
①
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지역당의 소재지와 명칭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13조 <u>(시·도당 및 지역당의 등</u>
<u>록신청사항)</u> ① ~ ③ (현행
과 같음)
제14조(변경등록)
케13
조(시・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
<u>신청사항)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2(법정지역당수) ① 정당

<u><신 설></u>

제19조(합당) ① • ② (생 략) 저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<u>시·도당</u>도합당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<u>시·도당</u>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

		1
	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	<u>셔</u>
	<u>야 한다.</u>	
	②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	•
	도에 분산되어야 한다.	
	③ 1개의 시·도에 두는 지역	역
	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	의
	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	
1	18조의3(지역당의 법정당원수	<u>=)</u>
	①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'	당
	원을 가져야 한다.	
	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	정
	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	<u>원</u>
	은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여	<u>안</u>
	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.	
	19조(합당) ① · ② (현행	과
	같음)	
	3	
	<u>X</u>]	•
	도당 및 지역당	- —
	시·도'	당
	미 기어다.	
	및 지역당	

4	신식	설합	당된		정당	}0]	제:	}항
단사	리의	규>	성 에	0	한	기간	• •	내
에	변경	병등.	록신	청	을	하지	(٥	-니
한	경우	우에 :	는 -	コ	フ	간만회	문일	의
다음	음 닐	네	당히	H <u>:</u>	시 •	도당	은	소
멸독	니 것	<u>O</u> E	근 본	-다				

⑤ (생략)

제23조(입당)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<u>시</u>
<u>·도당</u>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 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시·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 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 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, 시·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

4
<u>시·도당 및 지역당</u>
 ⑤ (현행과 같음) 제23조(입당) ①
<u>시·도당, 지역당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<u>시·도당, 지역당</u>
시·도당, 지역

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입당의 효력 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.

③ 입당신청인은 시·도당 또 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 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 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 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중 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·도 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 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.

<u>8</u>
③시·도당, 지
역당
<u>시·도당, 지역당</u>

④ (생 략) <신 설>

제24조(당원명부) ① <u>시·도당</u>에 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 다.

② 중앙당은 시·도당의 당원 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·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.

③ · ④ (생 략) 제25조(탈당) ① 당원이 탈당하고

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
라 시・도당, 지역당 또는 그
<u>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</u>
하여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당
원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
는 시·도당 또는 지역당에도
각각 소속된 것으로 본다.
제24조(당원명부) ① 시·도당 및
지역당
②시·도당 및 지역
당
시·도당 또는 지역당
W. TO TE VIJO
\\
<u>시·도당 또</u>
<u>는 지역당</u>
,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25조(탈당) ①

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·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, 소속 시·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시·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.
-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·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 소하고,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. <<u>후단 신설></u>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 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

시·도당 또는
지역당
 <u>시·도당 또는 지역당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2
<u>시·도당, 지역당</u>
(3)
시·도당 또는 지역당
<u> </u>
이 경우 당원명부의 기
재를 말소한 시·도당 또는 지
역당은 해당 탈당원이 속하였
던 지역당 또는 시·도당에 각
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4

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 부하고, 해당 <u>시·도당</u>에 통보 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 하게 하여야 한다.

제26조(탈당원명부) <u>시·도당</u>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 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27조의2(입당원서・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) ① 시·도당은 당원명부・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30조(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)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 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시·

	<u>시·도당</u>
	또는 지역당
제	26조(탈당원명부) <u>시·도당 및</u>
	<u>지역당</u>
제	27조의2(입당원서·탈당신고서
	의 보관 및 폐기) ① <u>시·도당</u>
	<u>및 지역당</u>
	,
-11	② (현행과 같음)
셰	30조(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
	제한) ①

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·도당별로 <u>중앙당이 정</u> 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35조(정기보고) ① 중앙당과 시 •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(시•도당 은 1월 31일)까지 관할 선거관 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 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중앙당과 시·도당은 제17 조(법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 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 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 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ਨ
망당이 정하며, 지역당에는 2명
을 초과할 수 없다.
제35조(정기보고) ①
<u>시·도당 및 지역당</u>
시·도당 및 지역당
 ② <u>중앙당과 시·도당 및 지역</u>
당은 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,
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
수), 제18조의2(법정지역당수)
및 제18조의3(지역당의 법정당
<u>원수)의 요건</u>

- ③ · ④ (생 략) 제37조(활동의 자유) ① · ② (생 략)
 -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·시·군, 읍·면·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누구든지 시·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.
- 제44조(등록의 취소)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.
 - 1. 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. 다만,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,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.

<u>.</u>
·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37조(활동의 자유) ① • ②
(현행과 같음)
③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
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
·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
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다.
제44조(등록의 취소) ①
<u>.</u>
1. <u>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, 제1</u>
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,
제18조의2(법정지역당수) 및
제18조의3(지역당의 법정당
원수)의 요건

2. · 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6조(시·도당 창당승인의 취소)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는 시·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현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,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한다.

제47조(해산공고 등) 제45조(자진 해산)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 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 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·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 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.

2.·3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46조(시・도당 및 지역당 창당
<u> </u>
 시·도당
및 지역당
제47조(해산공고 등)
<u>시·도당 또는 지</u>
<u>역당</u>

제	593	조(호	러위-	등복	록신	청	죄	등) (다
	음	각	호(의	어	<u>_</u>	하	나	케	해	당
	하님	는 :	자는	· 2	년	0]	하	의	징	역	0]
	나	200)만옥	원	०) ह	하으	4	벌급	금어		처
	한[구 .									

- 2. (생략)
- 3. 제37조(활동의 자유)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 ·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<u>당원협의회 등의 사</u> 무소를 둔 자
- ② (생 략)

· 제59조(허위등록신청죄 등) ①
·.
1
조(시・도당 및 지역당의 등
<u>록신청사항)</u>
2. (현행과 같음)
3
사무소를 <u>둔</u>
<u>자</u>
② (현행과 같음)